

참고1

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

□ 배경
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(특화특구) 운영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(법정사항) 및 포상* 실시

* 대통령상(1), 국무총리상(2)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(6)

【「지역특구법」 관련 조항】

제23조(특화특구 운영의 보고)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특화특구운영의 평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.

- 169개 특구 대상 계량평가('24.5월~7월), 정성평가('24.9월~10월), 대국민 평가('24.10월)를 거쳐 시상 대상인 9위까지 선정

□ 최종 평가결과

- 평가점수 계량평가(20%), 정성평가(30%), 대국민 평가(50%) 반영

지역	특구명	시상내역
경북 경주시	유소년스포츠특구	대통령상
강원 정선군	아리랑5일장특구	국무총리상
충북 청주시	직지문화특구	
경남 산청군	한방약초산업특구	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
부산 부산진구	서면 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	
서울 강서구	미라클-메디특구	
전남 곡성군	섬진강기차마을특구	
전남 담양군	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	
충남 논산시	청정딸기산업특구	